

#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5,938,841	9,178,165
일반회계	291,479,367	8,744,381
특별회계	14,459,474	433,784
기타특별회계	14,459,474	433,784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68,060	17,0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86,734	59,6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7,717	13,73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22,041	42,661
주차장특별회계	9,817,199	294,5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기반시설특별회계	7,723	2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59,18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000,000천원으로 한다.